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일반 관람공개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http://www.prugio.com/house/2020/gwangmyeong>)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지정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분양 상담 전화(1800-150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5.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 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1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제3조에 따라 '20.4.17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07.)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2018.05.0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지촉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지촉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gwangmyeo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광역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단,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가능 다.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가능 다.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지역, 기타지역 모두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면적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무주택자 우선 선정 이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일을 분리하여 점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는 물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 이상(2018.05.0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양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 공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정하는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됨.

■ 2018.05.0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의 당첨발표일은 일반공급 입주자 당첨발표일과 같은 날 동·호수를 포함하여 발표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해당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제 7호의 각목

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2)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2호,4호,6호,7호 가목,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 기관중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단,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6조에 다른 재당첨제한 경과조치 대상은 제외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조회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회 및 청약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부적격 당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 및 계약세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다.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정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안내 - “경기도 광명시”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 LTV(40%), DTI(40%) / 1주택(분양권·임주권포함) 보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금지(1년 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 예외 허용 사유 LTV(40%), DTI(40%)) 2주택(분양권·임주권포함)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

※ 단, 계약취소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며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첨자로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임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 (일반/특별공급 당첨자)	계약체결
		해당지역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일 정	2020.05.18.(월)	2020.05.19.(화)	2020.05.20.(수)	2020.05.21.(목)	2020.05.27.(수)	2020.06.01.(월)~ 2020.06.05.(금)	2020.06.08.(월)~ 2020.06.10.(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특별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 청약신청자격 서류 (10:00~16:00)	3일간 (10:00~16:00)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건본주택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 5440호(2020.05.0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22번지 일원 (광명1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7층 12개동, 총 1,335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4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796세대(보유지 13세대 포함), 임대주택 75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4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 구 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 영 주 택	2020000558	01	36.9424	36B	36.9424	12.9676	49.9100	25.7023	75.6122	18.6908	45	4	4	9	1	18	27	2
		02	49.9055	49	49.9055	16.7882	66.6937	34.7213	101.4150	25.2495	38	3	3	7	1	14	24	2
		03	59.3579	59A	59.3579	21.3137	80.6716	41.2976	121.9692	30.0319	72	7	7	14	2	30	42	16
		04	59.6069	59B	59.6069	21.2095	80.8164	41.4709	122.2873	30.1579	242	24	24	48	7	103	139	8
		05	59.4654	59C	59.4654	20.9484	80.4138	41.3724	121.7862	30.0863	67	6	6	13	2	27	40	6
합계											464	44	44	91	13	192	272	34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지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광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	2회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 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2020.09.15	2020.09.15	2021.01.15	2021.04.15	2021.10.15	2022.04.15	입주지정일
36B	101동 2호,3호	2층	2	102,200,000	124,900,000	227,100,000	10,000,000	1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68,130,000
		3층	2	104,300,000	127,500,000	231,800,000	10,000,000	13,180,000	23,180,000	23,180,000	23,180,000	23,180,000	23,180,000	23,180,000	69,540,000
		4층	2	106,700,000	130,400,000	237,100,000	10,000,000	13,710,000	23,710,000	23,710,000	23,710,000	23,710,000	23,710,000	23,710,000	71,130,000
		5-9층	10	109,000,000	133,300,000	242,300,000	10,000,000	14,230,000	24,230,000	24,230,000	24,230,000	24,230,000	24,230,000	24,230,000	72,690,000
		10-19층	15	111,500,000	136,400,000	247,900,000	10,000,000	14,790,000	24,790,000	24,790,000	24,790,000	24,790,000	24,790,000	24,790,000	74,370,000
		20-29층	14	114,000,000	139,500,000	253,500,000	10,000,000	1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76,050,000
49	101동 1호,4호	2층	2	149,800,000	183,100,000	332,900,000	10,000,000	2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99,870,000
		3층	2	153,100,000	187,200,000	340,300,000	10,000,000	2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102,090,000
		4층	2	156,500,000	191,500,000	348,000,000	10,000,000	2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5-9층	10	160,000,000	195,700,000	355,700,000	10,000,000	2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106,710,000
		10-19층	8	163,700,000	200,300,000	364,000,000	10,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20-29층	14	167,600,000	204,900,000	372,500,000	10,000,000	2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111,750,000
59A	106동1,2호 107동1,2,3,4호 108동1,2호 109동1,2호 111동1,2,6,7호	1층	5	208,400,000	255,000,000	463,400,000	20,000,000	2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139,020,000
		2층	9	211,400,000	258,600,000	470,000,000	20,000,000	2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3층	14	214,600,000	262,400,000	477,000,000	20,000,000	2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4층	7	217,700,000	266,300,000	484,000,000	20,000,000	2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20-29층	16	230,200,000	281,500,000	511,700,000	20,000,000	3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153,510,000
		30층이상	13	234,000,000	286,200,000	520,200,000	20,000,000	3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156,060,000
	110동1,2호	2층	2	204,700,000	250,300,000	455,000,000	20,000,000	2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3층	2	214,600,000	262,400,000	477,000,000	20,000,000	2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20-29층	4	230,200,000	281,500,000	511,700,000	20,000,000	3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153,510,000
59B	105동2,3호 108동4,5호 109동4,5호	1층	1	191,100,000	233,700,000	424,800,000	20,000,000	2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127,440,000
		2층	5	199,200,000	243,700,000	442,900,000	20,000,000	2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132,870,000
		3층	6	202,200,000	247,400,000	449,600,000	20,000,000	24,960,000	44,960,000	44,960,000	44,960,000	44,960,000	44,960,000	44,960,000	134,880,000
		4층	6	205,200,000	251,000,000	456,200,000	20,000,000	2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136,860,000
		5-9층	30	209,000,000	255,700,000	464,700,000	20,000,000	26,470,000	46,470,000	46,470,000	46,470,000	46,470,000	46,470,000	46,470,000	139,410,000
		10-19층	58	213,100,000	260,600,000	473,700,000	20,000,000	2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142,110,000
		20-29층	40	216,900,000	265,400,000	482,300,000	20,000,000	28,230,000	48,230,000	48,230,000	48,230,000	48,230,000	48,230,000	48,230,000	144,690,000
		30층이상	36	220,500,000	269,800,000	490,300,000	20,000,000	2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147,090,000
	111동4,5호	1층	2	187,500,000	229,300,000	416,800,000	20,000,000	2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125,040,000
		2층	2	190,200,000	232,700,000	422,900,000	20,000,000	2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126,870,000
		3층	2	193,200,000	236,400,000	429,600,000	20,000,000	2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128,880,000
		4층	2	196,200,000	240,000,000	436,200,000	20,000,000	2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130,860,000
		5-9층	10	200,000,000	244,700,000	444,700,000	20,000,000	2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133,410,000
		10-19층	20	204,100,000	249,600,000	453,700,000	20,000,000	25,370,000	45,370,000	45,370,000	45,370,000	45,370,000	45,370,000	45,370,000	136,110,000
		20-29층	19	207,900,000	254,400,000	462,300,000	20,000,000	2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138,690,000
		30층이상	3	211,500,000	258,800,000	470,300,000	20,000,000	2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141,090,000
59C	105동1,4호 108동3호 109동3,6호	1층	2	208,400,000	255,000,000	463,400,000	20,000,000	2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139,020,000
		2층	5	211,400,000	258,600,000	470,000,000	20,000,000	2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3층	5	214,600,000	262,400,000	477,000,000	20,000,000	2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4층	6	217,700,000	266,300,000	484,000,000	20,000,000	2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111동3호	5-9층	29	221,800,000	271,300,000	493,100,000	20,000,000	2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147,930,000
		10-19층	9	226,100,000	276,500,000	502,600,000	20,000,000	3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150,780,000
		20-29층	4	230,200,000	281,500,000	511,700,000	20,000,000	3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153,510,000
		30층이상	7	234,000,000	286,200,000	520,200,000	20,000,000	3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156,06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5.18. (월)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청약Home))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36B	49	59A	59B	59C	합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청	1	1	1	5	1	9
		서울시청	1	1	1	4	1	8
		인천시청	1	1	1	4	1	8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	-	-	3	-	4
		장기복무제대군인 외	-	-	1	1	1	3
	중소기업근로자		-	-	1	2	1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2	1	3
	위안부		-	-	1	1	-	2
	북한이탈주민		-	-	1	1	-	2
	의사상자		-	-	-	1	-	1
	계		4	3	7	24	6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7	5	11	36	10	69
		일반공급(25%)	2	2	3	12	3	22
		계	9	7	14	48	13	9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경기도 거주자(50%)	2	2	4	12	3	2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	3	12	3	21
		계	4	3	7	24	6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1	1	2	7	2	13
합 계			18	14	30	103	27	19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인 광명시 2년 이상(2018.05.07.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공통사항)

구분		내용																			
세대당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청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자격 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분</th><th>경기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table>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4호(5.18민주유공자), 5호(특수임무유공자), 6호(참전유공자), 8호에 의거 제35조1항제6호(장기복무 제대군인), 7호(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호(의사상자), 9호(북한이탈주민), 15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②장기복무 제대군인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③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④ 의사상자 :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⑦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⑧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임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임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또한,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제 2018-269호, 2018.05.08.」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건설지역(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거주지역에 따라 “배정기준표”의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이하 주택건 설량의 20% 이내 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가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가간을 포함한다)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원) * (N-8) }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으로 인정)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건설량의 3% 이내 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추천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자촉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태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광역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정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정제 100% / 추첨제 0%) 1) 가정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 광역시 2년 미만 거주, 서울특별시·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광명시에 2년 이상(2018.05.0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동·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정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정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100%	0%
전용면적 85㎡ 초과	50%	50%

- 2007.09.0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정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5.18.(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번지)
일반공급	1순위(해당)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0.05.19.(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기타) (광명시 2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2020.05.20.(수) 08:00~17:30		
	2순위	2020.05.21.(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광명시 2년 이상(2018.05.07.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광명시 2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1순위 청약 시 유의 사항 - “해당지역(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광명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불가(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광명시) 1순위에서 청약마감 시 더 이상 접수 하지 않음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 전 반드시 광명시 전입일 확인 요망(2018.05.07.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요망)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u>청약자가 원할 경우</u>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권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정제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 공급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 또는 자료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5.27.(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gwangmyeong>)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5.27.(수) ~ 2020.06.05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5.2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20.06.01. (월) ~ 2020.06.05. (금) / 5일간 10:00 ~ 16:00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07.)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동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피분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전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분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기본증명서		○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관련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제3자 대리 제출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임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Ⅶ

계약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6.08. (월) ~ 2020.06.10. (수) / 3일간 10:00 ~ 16:00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무순위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경기도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 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광명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계약금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임화회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01-0262-7371-21	광명제15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주식회사대우건설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 부여(가상계좌)		

※ 분양대금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는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모계좌(농협은행 301-0262-7349-81 광명제15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주식회사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현금수납불가.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

- 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불 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분양가 9억원 이하)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2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작은도서관 등

■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높이는 2.3m 미만입니다. 지상의 비상차로 동선을 통해 모든 동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Ⅷ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36B	49	59A	59B	59C
발코니 확장 금액		발코니확장 미제공	8,290,000	12,500,000	11,970,000	13,080,000
계약금	계약시		1,000,000	1,250,000	1,200,000	1,300,000
잔금	입주지정일		7,290,000	11,250,000	10,770,000	11,780,000

※ 계약금 정액, 잔금 잔여분임. 회사에서 납부 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입금계좌는 하단에 표기)

※ 36B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며 비확장으로 시공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 및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일부창호 제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부분(예를 들어 안방발코니 창)은 단창으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통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통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기타 선택품목

■ 확장시 선택품목 (49타입)

타입	구분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49	주방키큰장	김치냉장고 상부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모든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1)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 액		비 고
전 타입	거실/주방 바닥재	강마루	타일	36B	380,000	주방바닥재
				49A	520,000	
				59A	180,000	
				59B	590,000	
				59C	180,000	
				59A	620,000	
				59C	620,000	

전 타입	주방 상판/벽체 마감재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주방벽체 : 타일	상판+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36B	430,000	거실/주방바닥재
				49	1,310,000	
				59A	1,310,000	
				59B	1,200,000	
				59C	1,350,000	
	침실 불박이장	미제공	침실 불박이장	59A	730,000	
				59B	730,000	
				59C	730,000	
	59B	침실2	기본 침실벽체 + 도어	유리 슬라이딩도어	59B	1,740,000

2)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구분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금 액		비 고
전타입	선택옵션	미설치	중문 설치	36B	1,94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49A	1,990,000	
				59A	1,980,000	
				59B	1,960,000	
				59C	1,940,000	

3)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 함)

타입	품목	제조사	옵션선택	모델명	금액	비고
전타입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비앤디	일반형	DA100	490,000	택1
			고급형	GB200	530,000	
36B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콤비냉장고	RL2640Z(Y)BBEC	1,140,000	콤비냉장고 선택시 주방 키큰수납장 추가됨
49	하이브리드 쿡탑	쿠스한트	하이라이트2구 + 가스1구	KCT-KE60	590,000	택1
			인덕션2구 + 가스1구	KCT-ID60	820,000	
59A	전기오븐	SK매직	일반형	EON-B450M	450,000	택1
59B			고급형	EON-B401SA	650,000	
59C	김치냉장고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RQ22K5L(R)01EC	1,200,000	택1
			콤비냉장고	RL2640Z(Y)BBEC	700,000	

4)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이며 추후 판매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는 판매품목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일반배수구가 기본 시공됨
- 하이브리드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 가스쿡탑이 기본 시공됨

- 전기오븐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수납장이 기본 시공됨
- 김치냉장고/콤비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 구조에 따라 냉장고 문열림 방향이 다를 수 있음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상의 이유로 일정 공정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제품이 변경될 예정임(유리 사양, 제품형태,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인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상의 문제(하부의 오븐과의 간섭문제) 등으로 실제 시공시 해당 부위의 주방가구 형태(오븐 설치 높이 및 디테일 등)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표기 (침실1,2등)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01-0268-5590-01	(주)대우건설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 부여(가상계좌)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옵션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의 경우는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모계좌(농협은행 301-0268-5596-11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별도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36B 제외)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봄)하다가 다른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리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총전의 「건축법」(법률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유의사항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주방창호 크기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창호는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창틀, 하드웨어 등 창호사양 포함) 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는 36B, 49, 59B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선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존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모형 또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단위세대, 단지모형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또는 사진 등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및 시공과정 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또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공사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전시된 방충망 제품은 본공사시 설치제품 및 제작업체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분양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자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자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자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O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1. 일반사항

-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다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경사지에 계획된 관계로, 동별로 차랑 및 보도 이동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동의 주변 레벨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지하철과의 거리 등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층은 PC 또는 철골 및 PC 등으로 설계 및 시공될 수 있음
- 구조 및 흠막이 설계는 실시설계시 상세한 검토 및 시공계획에 의해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사업시행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 · 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임.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예정(현재 106동 근처에 설치할 계획임)이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비구역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 등이 아니므로 입주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06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구역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역내 계획된 공원, 녹지,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현재 계획된 주변 공원과 녹지 계획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함.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축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임.

2. 단지배치/조경

- 출입구 근방에 설계된 주동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및 차량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문주 등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단지 내·외부 레벨차로 인한 데크식 설계로 되어있는 구간이 존재함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부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주민들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9동 하부에 경로당, 작은도서관 및 부대복리시설, 110동 하부에 어린이집,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104동, 105동, 106동 근린생활시설 근처 동의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분진 및 냄새,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10동 하부에 휘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고, 109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독서실 포함)이 위치하여 근방 주동은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계획되어 있음
- 전면과 후면의 지면높이가 차이가 큰 동(세대)이 있으며, 향후 본 공사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지면과 세대바닥 레벨간의 차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과의 레벨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옹벽, 석축 등의 설치에 의해 조망, 일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부지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도보 및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이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 및 지층성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에 인접한 동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2동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해당 세대는 내와 협의에 의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내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모든 공용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임대주택 세대 입주민과 공동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 및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음
- 레벨 차이로 인해 인접 세대, 인접한 동 간 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층수라 하더라도 주변의 지면높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상담사나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등을 통해,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상가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및 환기창, 생활폐기물보관소, 가스정압기실 등 단지내 시설(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헨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조경, 동원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주,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설치위치 및 설치개소, 형태, 높이, 폭,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게이트형 문주는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103동 2층 세대는 조망권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하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필로티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 (모형/배치도/분양 카타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새싹정류장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3.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 · 일반 · 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생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동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은 109동, 110동 하부 및 인근 지하층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집과 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으며, 실내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스크린골프 시설의 경우, 스크린골프 시설만 설치되며 그 외의 집기류나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쪽에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104동, 105동, 106동 인근 지상 혹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정공간에 설치되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지하에 정화조 (현재 104동, 106동 측면, 위치는 실제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가 설치될 예정이며, 배기덕트가 공용부분 P.D.를 사용하여 104동, 106동 최상 옥탑층으로 배출될 예정으로 인근 동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은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냄새 피해 등이 생길 수 있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정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음.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광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 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광명시와 체결하여야 함.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4.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 근방에 위치한 세대는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근생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주차장과 출입구를 함께 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문주,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량 진출입구는 단지 북측, 동측, 서측으로 3개소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5. 아파트주동

- 2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는 30층 이상이라도 법적기준에 맞춰 ELV 1대가 설치되오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저층부 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 석재(화강석)로 마감될 예정, 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마감 및 상부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 옥상에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및 옥상녹화 부분은 현장여건 또는 각종 인증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의 경우 필로티 캐노피가 외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필로티 계획 및 벽 또는 기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하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필로티 하부 설치를 검토중에 있는 무인택배시스템 (동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예정임)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천정고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내에는 각종 현충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 제연실(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시 동별 위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예정임.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지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의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외부공간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택배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임
- 일부동의 공용구간(PS, AD)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용 덕트의 설치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일부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6.단위세대

<공동>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하기로 함.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무상옵선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함.
- 선택형 타입의 경우 분양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 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에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준공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는 빨래건조대는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삭제 또는 발코니 축소되는 세대의 경우 설치위치가 그렇지 않은 세대와 다를 수 있으며, 발코니 크기에 따라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일부 세대는 평면특성상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실외기실(하향식피난설치)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출입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함.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등 열린부위가 없도록 입주자께서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함.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단, 주방가구 하부에는 에폭시페인트로 마감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부 설치되는 마감재 중 조합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이 상이할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발코니, 일부 싱크 대하부 공간등은 욕실 난방이 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운선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 평형에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에 제공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매퍼배관이 설치될 경우 해당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퍼배관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욕실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6A와 45타입의 욕실 및 주방배기 시스템은 평면 디자인에 따라 옥상배기방식이 적용되며, 그로 인해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이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기타 타입은 각종 각세대 외부측벽으로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배출시스템은 추후 실시설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풍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어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후덥시블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이며,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선반의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본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빗물저수조, 정화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에 빗물저수조 및 정화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면적은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됨
- 저층부 세대(1~3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 내에 전열교환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와 각종 배관 설치 등으로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발코니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수전위치, 바닥단차 부위는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가칭)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 LGU+, SKT)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36B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며 비확장으로 시공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발코니내에 세탁기 설치시 보일러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세탁기를 제거해야만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외기에 면한 실의 경우 발코니가 삭제 또는 축소된 타입은 단열재 설치로 세대 내부로 일부 벽면이 돌출될 수 있으며, 해당 발코니가 삭제되어 확장이 되지 않는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발코니 유무를 확인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바닥 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또는 유상옵션 선택 유무 등에 따라 설치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또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0-101-0001200호	일천사백사십팔억사천삼백이십삼만원 (₩144,843,23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관련(보증약관 제29조)

- ① “광명1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사업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광명1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 및 일반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한다. [표준사업약정서 제29조(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관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고
건축감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3,088,024,500	
전기감리	세종종합기술주식회사	745,273,417	
소방/통신 감리	(주)두성엔이에프	781,55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정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장수명 주택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인증 등급 최종 등급 :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정서 1. 공동주택명 : 광명 제15R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신청자 : 광명 제1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 평가등급 최종 등급 : ★★★ 한국감정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 등급 최종 등급 : 1등급 한국감정원	장수명 주택 인증서 1. 인증번호 : 장수명-2018-034 2. 신청자(사업주) : 광명 제15R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건축물명 : 광명15R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4. 대지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22번지 일원 5. 인증등급 : 일반(★) 한국감정원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

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광명1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법인등록번호 : 134971-0002511	(주)대우건설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prugio.com/house/2020/gwangmyeong>

■ 분양문의 : ☎ 1800-1507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으면,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